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 내용 공개

크리에이트자산운용(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단, 다음의 정보는 제외.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3. 자본시장법상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하 ‘PFV’),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REIT’)와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펀드, PFV, REIT와 통칭하여 ‘투자기구’) 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단, 다음의 정보는 제외하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2조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는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PFV, REIT, SPC의 재산 중 부동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PFV, REIT, SPC 재산의 운용 관련 정보로서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1. 고유재산 운용업무
2. 집합투자재산 투자 업무
3. 집합투자재산 자산관리(AM) 업무
4. 기타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업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1. 회사의 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공모 Fund, 상장 REIT 및 이와 유사한 상장 투자기구의 상장증권
2. 회사의 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상장증권
3. KKR Inc.의 증권
4. 기타 회사 또는 회사가 운용·자산관리하는 투자기구가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장증권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1.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 ① 회사 또는 회사의 투자기구(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투자기구가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거래의 양쪽 회사자 모두에 관여하여 거래하는 경우

- ② 회사의 투자기구가 해당 투자기구의 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
- ③ 어떠한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투자기구와 그 거래 상대방 양쪽으로부터 회사가 보수 또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④ 회사 투자기구의 피투자자, 거래상대방 또는 차주와 회사가 거래하는 경우
- ⑤ 회사의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회사 또는 회사의 투자기구가 거래하는 경우
- ⑥ 회사의 임직원,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이하 ‘임직원등’) 또는 임직원등이 출자한 업체(단, 본 호에서 상장법인은 제외)와 회사의 투자기구가 거래하는 경우 또는 거래를 시작한 이후 임직원등이 해당 업체에 출자하거나 업체의 지분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 ⑦ 임직원이 회사가 운용하는 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하는 경우. 단, 책임운용을 위하여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투자기구의 운용인력이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 등으로 투자기구가 해지·해산·청산됨에 따라 회수되는 경우는 제외
- ⑧ 기타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대응방안

- 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 담당자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 거래의 내용, 이해상충의 유형 및 이해상충 가능성의 수준 등을 해당 부서의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의 수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해당 거래의 실행 여부를 논의하
- ②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거래가 가능

- ③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거래사실을 사전에 고지
- ④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중대성에 따라,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 임직원의 업무를 수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음이 원칙
2.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 거래 불가
3. 이해상충 발생 우려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제한·관리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식별기준을 마련하여 설정하고,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담당조직을 설치·운영
5. 상시정보교류 허용 임원 지정 및 정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
6.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 원칙적 금지
7.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접근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는 등 예외적 교류의 원칙을 정의
8. 정보교류차단 기록 유지, 정기적 점검 및 임직원 교육 등